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35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 공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I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

- 응시대상 : 766명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화학분야 제외
- 시험기간 : 2021. 5. 13.(목) ~ 5. 26.(수) / 9일간
- 등록시간 : 해당 시험일 08:30 ~ 09:00 (09:00 이후 시험장 입장 불가)
※ 등록장소 : 서울소방학교 시민지원동 1층
- 시험장소 : 서울소방학교 실내훈련장 및 야외 - [붙임 1] 참조
- 일정구분

시험일	구분	응시번호	응시대상 (명)	전체인원 (명)	도핑대상 (명)
	분야				
계			766	766	45
5.13.(목)	소방(남)	111-011-0012 ~ 111-011-0328	85	85	5
5.14.(금)	소방(남)	111-011-0329 ~ 111-011-0680	85	85	5
5.17.(월)	소방(남)	111-011-0684 ~ 111-011-1017	85	85	5
5.18.(화)	소방(남)	111-011-1018 ~ 111-011-1300	85	85	5
5.20.(목)	소방(남)	111-011-1302 ~ 111-011-1540	85	85	5
5.21.(금)	소방(남)	111-011-1543 ~ 111-011-1876	85	85	5
5.24.(월)	소방(남)	111-011-1877 ~ 111-011-1913	12	88	5
	구급(남)	111-031-0002 ~ 111-031-0178	76		
5.25.(화)	구급(남)	111-031-0179 ~ 111-031-0204	17	84	5
	구조	111-081-0003 ~ 111-081-0091	32		
	정보통신(전산)	111-291-0108	1		
	정보통신(통신)	111-301-0113	1		
	정보통신(정보보안)	111-311-0115 ~ 111-311-0116	2		
	전기.전자	112-261-0105	1		
5.26.(수)	소방(여)	111-012-0001 ~ 111-012-0253	30	84	5
	소방(여)	111-012-0256 ~ 111-012-0815	66		
	구급(여)	111-032-0013 ~ 111-032-0126	18		

6. 별도시험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에 의한 사전 신청자
7. 응시방법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접수 → 개별 안내
8.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2] 참조
9. 측정방법 : [붙임 3] 참조
10. 합격발표 : 2021. 6. 15.(화) /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 등
 - ※ 합격결정 : 6종목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 시 합격 처리
11.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마스크, 운동복, 운동화, 간식, 식수 등
 - ※ 징, 스파이크가 박힌 운동화 착용 불가

II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자는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운영본부에서 준비)
2.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3.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대상의 5%에서 무작위로 선정
 - ※ 도핑테스트에 선정된 응시자는 중도탈락, 포기외 상관없이 도핑테스트에 응하여야 하며 무단이탈 또는 거부할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력시험 종료 후 채취)
4. 시료 채취(소변 90ml 이상) 후 봉인하여 검사 의뢰(국립과학수사연구원)
5.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4] 참조
6.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51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III 응시자 유의사항

1. 일반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09:00까지 서울소방학교 시민지원동에서 등록(핸드링, 번호판 착용)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불합격 처리)

-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119고시 누리집(<http://119gosi.kr>)에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충분한 연습(준비운동 포함)을 하시고, 시험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 체력시험일 오전에는 “악력·배근력·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제자리 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고, 휴식(중식) 후 오후에는 “왕복 오래달리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식 제공 없음, 응시자가 직접 준비)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고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우천 시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시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경된 시험 일정을 서울소방학교 누리집(채용정보란)에 공지하겠습니다.
- 바.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신발 또는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 탄마가루는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 또한 금지
- ※ 악력·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기관에서 제공하는 반코팅 장갑 사용 가능
- 사.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응시포기서 작성 및 핸드링 반납)
- 아.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 변상하여야 하고, 시험장은 금연지역으로 흡연 적발 시 법적조치 합니다.
- 자.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차.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카.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타.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합니다.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파. 본 공고문 안내사항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 시험관리관 지시에 불응하는 응시자,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응시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응시자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평가 시에만 벗는 것 허용(단, 측정 종료 후 바로 착용)
 ※ 마스크는 KF94 등급 이상을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하시고,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해당일정에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별도 일정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방법은 [붙임 5] 참고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붙임 6, 7, 8 참조

- ▷ 대 상 :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 시험 응시에정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등
- ▷ 신청기간 : 본인 시험 응시에정일 전날 24:00까지
- ▷ 신청방법 : 전화연락(02-2106-3622) 및 접수(메일: sanghany@seoul.go.kr / 팩스: 02-2106-3666)
- ▷ 제출서류 : 시험응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의사소견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 라. 응시 당일 발열 증상(37.5℃ 이상) 및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가족 중에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코로나 검사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당일 마지막 순번으로
체력시험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첨부)”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소 안내 1부.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1부.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1부.
 6.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자진신고시스템 안내 1부.
 7.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9.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1부.
 1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11.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1부.
 1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부. 끝.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 전 화 : 02) 2106-3621~6, FAX 02) 2106-3666
- ▶ 누리 집 : <https://fire.seoul.go.kr/school>
-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113-17)
-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구파발 ③번 출구(도보 10분)

□ 응시표 출력 및 성적조회 : 119고시 누리집

- ▶ 누리 집 : <http://119gosi.kr>
- ▶ 전 화 : 053-474-1212 (장애사항 문의 : 에스이코리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소 안내

□ 서울소방학교 위치안내



구파발역 3번 출구 → 롯데몰 → 좌측 다리이용 → S-OIL주유소 앞 횡단보도
 → 맞은편 은평성모병원 앞길 → 서울소방학교(은평구 통일로 1031-21)

□ 체력시험 등록 장소



□ 등록장소
 : 서울소방학교
 시민지원동 1층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5-2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 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붙임 4-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4-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 ① **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06-3622)으로 확진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 알림**
- ② **지역별로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
- ③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제출방법 : 메일(sanghany@seoul.go.kr) / 팩스(02-2106-3666)로 제출
- ④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서 지정한 별도 일정에 체력시험 진행**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06-3622)으로 자가격리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 알림**
- ②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제출**
 - 제출방법 : 메일(sanghany@seoul.go.kr) / 팩스(02-2106-3666)로 제출
- ③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별도 일정에 시험 진행**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
 - 시험장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이며, 시험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하고자 안내함.

■ (대 상)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시험 응시자 중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이 신청한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유증상자 등)
- ③ 가족 중에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코로나19 검사 중인 경우

■ (신청기간) 본인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 ※ 별도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함
- ※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가 불가함

■ (신청방법)

- ① 붙임 7, 붙임 8, 의사소견서(확진자), 자가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 ②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채용담당(02-2106-3622)에게 연락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

■ (제출서류)

- ① (붙임 7)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②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③ (확진자) 의사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

◆ 메 일 : sanghany@seoul.go.kr ◆ 팩 스 : ☎ 02-2106-3666

■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장소 및 일정 개별 유선 통보(시험 예정일 前)

■ (유의사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수준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의거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시번호	
현 주소지			
격리 기간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시험응시 신청서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통)
- ③ 체력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확진자용)
- ④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용)

상기 본인은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별도 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별도시험용)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확진·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일정으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등)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일반수칙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꼭 필요한 경우(병원방문 등)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가정 내 주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기
* 특히 고위험군(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과 접촉 피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
-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
-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
-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